



배포 일시	2023. 2. 17(금)			
담당 부서	도시재생사업기획단	책임자	과 장	최병길 (044-201-4920)
	도시정비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문영훈 (044-201-4960)
			사무관	임채현 (044-201-4465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정부가 발표한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」이 공약보다 후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 등, 2.17) >

- ◆ 1기 신도시 연합 “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, 대선공약보다 후퇴”
 - 특별법 적용대상을 1기 신도시 외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,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

□ 정부가 2월 7일 발표한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(통합심의),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,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등 공약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특정 단체가 언급하는 공약 후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
*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는 '22.9.29. 「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」을 통해 既발표

- 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들은 자족기능이 부족한 고밀 주거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도시 기능 강화와 도시 재창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 - 이에 특별법 주요내용에서 제시한 「특별정비구역」은 노후계획도시 특성에 걸맞는 개발 단위로 블록단위 통합정비, 역세권 복합개발, 기반 시설 확충,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.
 - 특별정비구역에 공약의 내용보다 진일보한 ‘안전진단 면제’ 등 높은 수준의 공공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도시기능 향상과 자족기능 강화 등 특수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

-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,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, 자족 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- ②**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, 보도된 것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외에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며,
-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, 생활SOC, 기여금 등 여러 다양한 수단 중에서 방식을 선택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부채납 수단은 사업시행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.
- ③** 아울러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은 「도시정비법」상 재건축 조합 등 개별법 상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, 단일사업시행자, 총괄사업관리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향후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.
- ④**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뿐이라 공공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정부는 그간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('22.10.17~18), 총괄기획가 제도 운영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들을 지속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